#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242

발의연월일: 2024. 12. 5.

발 의 자:이인영·박상혁·김용만

한정애 • 이정문 • 강준현

전진숙 · 김영진 · 백승아

이연희 · 장철민 · 김성회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비상임위원 선임 시 겸 직금지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함. 현실적으로는 비상임위 원이 기업체의 사외이사직을 겸임하고 있을 경우 이해충돌 우려로 인 하여 사외이사직을 사임하도록 하고 있으나,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 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에서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경우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임명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2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4조제4항에 따른 비상임위원은 재직 중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업·공업·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3항에 따른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)를 겸직할 수 없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 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겸직 등의 금지) (생 략)	제9조(겸직 등의 금지) ① (현행
	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② 제4조제4항에 따른 비상임
	위원은 재직 중 자산총액 또는
	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
	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업
	·공업·금융업 그 밖에 영리
	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
	사외이사(「자본시장과 금융투
	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3
	항에 따른 회사의 상무에 종사
	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)
	를 겸직할 수 없다.